

『2026년 스마트시티 엑스포 월드 콘그레스(SCEWC)』 부산관 전시 참가 기업 모집 공고문

(재)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는 부산 소재의 혁신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이 보유한 혁신 기술과 제품의 기술력 제고 및 글로벌 비즈니스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자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되는 『2026년 스마트시티 엑스포 월드 콘그레스(SCEWC)』 부산관 전시 참가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역량 있는 기업의 적극적인 신청 바랍니다.

2026년 08월 10일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이사

1 사업 개요

- ☐ 사 업 명 : 스마트시티 리빙랩 운영 활성화 사업 글로벌 부스팅
『2026년 스마트시티 엑스포 월드 콘그레스(SCEWC)』 부산관
참가 지원
- ☐ 주최/주관 : 부산광역시/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 ☐ 참가 전시회 개요 : 2026 SCEWC (Smart City Expo World Congress)
 - 개최기간/장소 : 2026년 11월 3일(화) ~ 11월 5일(목) 3일간 / 스페인 바르셀로나
 - 개최규모 : 130개국, 850개 도시, 1,150개사 참여
- ☐ 참가 신청기간 : 2026년 8월 10일(월) ~ 2025년 08월 23일(일) 24:00까지
- ☐ 사업내용 : 2026년 스마트시티 엑스포 월드 콘그레스(SCEWC) 부산관 전시 참가
지원
- ☐ 지원대상 : 스마트 도시건설&인프라, 교통, 에너지&환경, 라이프&헬스케어, 스마트 경제, 스마트 정부, IoT 및 기타 스마트시티 관련 분야 등 혁신 기술을 보유한 부산 소재 기업
- ☐ 지원규모 : 4개사 내외
- ☐ 지원내용
 - 2026년 스마트시티 엑스포 월드 콘그레스(SCEWC) 부산관 전시 홍보 부스 제공 (참가비, 입장료, 부스, 구축비 등)

- 참가 기업별 왕복 항공료(이코노미석 기준) 최대 4백만원, 기타 홍보, 물류, 숙박, 통역, 운영 관련 제반 비용 최대 1백만원 지원(사후 증빙 정산 지급)
- ※ 전시면적, 부스위치, 형태는 국토부 한국관(스마트도시협회) 내 부산관 디자인 및 형태에 따라 변경 가능

2 모집 개요

- 모집기간 : 2026년 08월 10일(월) ~ 2026년 08월 23일(일) 24:00까지
- 모집규모 : 4개사 내외
- 모집대상 : 부산 소재 기업으로, 전시가 가능한 완제품 및 상용화 기술을 보유한 기업
 -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상의 개업일 / 법인 기업 : 등본상의 회사설립 연월일을 기준
- 모집분야 : 스마트 도시 건설 및 인프라 구축관련 기술, 스마트 교통, 에너지, 환경, 헬스케어, IoT, 정보통신, 블록체인 등 스마트 시티 관련 분야
- 신청방법 :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제출서류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 후 담당자 이메일(chohs@ccei.kr)로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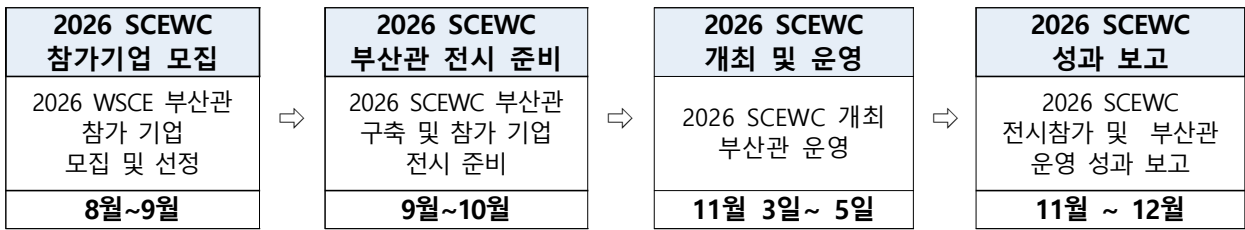
※ 이메일 제출 시 제목표기 : [기업명(대표자명)] 2026 SCEWC 부산관 전시 참가접수

□ 제출서류

구분	서류 항목
필수서류	· 전시 참가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기타 기업 역량을 나타낼 수 있는 자료/기기, IR자료 등 별도 추가 제출 가능 ·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2025.6.23. 이후 발급분
해당기업 한정	· 법인등기부등본, 특허 등록/출원, 투자유치 등 기타 실적 증빙이 가능한 서류 각 1부 · 영문 기업홍보 자료(브로셔, 영상 등)

3 주요 내용

□ 프로그램 추진일정



※ 상기 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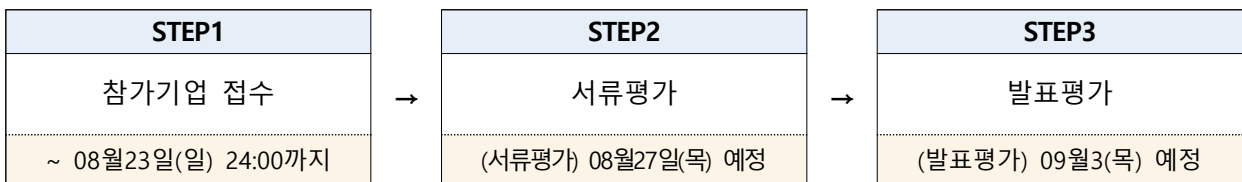
4 평가 개요

□ 평가 방법 : (1차)서류평가, (2차)발표평가(대면)

□ 평가 절차

- 서류평가를 통해 선정규모의 3배수 내외를 발표 대상기업으로 선정
- 발표평가는 발표·질의응답 포함 15분 내외로 진행되며, 대표자 발표를 원칙으로 함

□ 평가 일정



※ 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3배수 이내 접수시 발표평가만 진행 / 개별 일정 안내 예정

□ 평가항목

구분	평가항목	주요 내용
평가항목	기업역량 및 사업모델 혁신성 (25점)	· 신산업·신시장을 개척하려는 기술사업 모델의 독창성 및 차별성 · 기술 사업모델이 산업 및 시장을 선도할 가능성 · 수익모델의 적절성 및 확장 가능성
	전시회 참여 관련 마케팅(영업) 계획 (25점)	· 홍보 계획의 명확성 및 마케팅 계획, 실행 가능성 · 전시회 참가시 투자유치등 후속 성과 창출 가능성 등
	기술성 및 파급성 (25점)	· 핵심제품 기술성, 지식재산권 보유현황, 유사기술 대비 경쟁력 등 · 해당기술의 시장파급효과, 경제적 기대효과, 고용창출 효과 등
	성장성 및 적합성 (25점)	· 시장진출 및 성장 가능성 · 기술 사업모델의 고도화, 사업 확장을 통한 기업 내부적 성장 가능성 · 투자유치 및 글로벌 진출 등 후속성과 창출 가능성

5 유의사항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 참가신청서 및 제안서의 내용을 허위기재 또는 누락한 경우
 - 선정 취소·정부사업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선정 이후 기간 포함)
 - 제출된 제안서에 대한 내용은 접수 및 심사과정에서 비밀 유지
 - 타인의 아이디어, 기술 등을 모방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참가자 본인에게 있음
 - 본 프로그램에 명시된 사항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에게 귀속됨
 - 상기 공고사항은 주관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사업 선정 시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성과조사와 참가기업들의 후속 지원 등을 위한 성과관리시스템 가입(5년 정보제공동의 포함) 필수
 - 협약체결 시 가입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며, 미 가입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 신청제외 대상
 - 신청서가 미비하거나 신청 내용을 허위 기재한 경우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 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자 또는 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자(기업)
 -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6 관련 문의

☐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기반팀 담당자

☎ (전화) 051.749.8933 or 051.749.8952 / ✉ (이메일) chohs@ccei.kr

참고

창업 여부 기준표 ('26년)

신청기업구분	상세 구분			창업여부
개인기업	사업장 소재지(본사) 부산			기본요건
	타인으로부터 상속/증여	기존 사업과 동종의 사업 개시		창업아님
		이종		창 업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		창업아님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폐업 3년 초과	창 업
			폐업 3년 까지	창업아님
			부도/파산 - 2년 초과	창 업
부도/파산 - 2년 까지			창업아님	
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	-		창 업	
법인기업	사업장 소재지(본사) 부산			기본요건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폐업 3년 초과	창 업
			폐업 3년 까지	창업아님
			부도/파산 - 2년 초과	창 업
			부도/파산 - 2년 까지	창업아님
		동종전환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개인사업자의 창업자 지위승계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또는 최대주주	창업아님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하이면서 최대주주 아님	창 업
	자회사 여부	법인주주(임원 포함)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소유		창업아님
	과점주주 여부	다른 법인의 과점주주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초과 소유		창업아님
	회사형태 변경	동종유지		창업아님
		이종		창 업

※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인 창업기업(창업 여부 기준표에 따라 창업여부 판단)이고, 양도-양수기업 간 대표자 동일, 동종 업종,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완료, 양도기업의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야 함

※ **동종의 범위** :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를 기준으로 세세분류(코드번호 5자리)가 모두 일치하면 "동종"

* 통계청 통계분류포털 : kssc.kostat.go.kr

※ **과점주주** :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